

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충청북도도서관설치및사용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도서관에는 관장을 두되, 충청북도중앙도서관장은 지방사서서기관으로 보하고,
기타 도서관장은 지방사서주사로 보한다.

[별표]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중 제천도서관란을 삭제하고, 보은도서관과 영동도서관란
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도 서 관 명	위 치
보 은 도 서 관	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리 125-1
영 동 도 서 관	충북 영동군 영동읍 부용리 20-3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제1항의 도서관장 사서직 보임은 1997년
1월 1일부터 시행한다.